

2)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

- 병역면제자를 “대체복무요원”으로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들은 병역을 대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이 면제된 사람들임.
-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언제든지 대체복무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특히 전시 기타 유사시 병력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방업무의 마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정당하지 않은 조항임.
- 기타 사항은 임종인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평가와 같음.

다. 기타 사항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한국의 상당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병역 거부자가 복무할 사회복지시설은 한정되어 있음.
-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에 따른 중앙대체복무위원회 및 지방대체복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비용이 연간 238억에 달하며, 임종인의원 대표발의안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 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도 비슷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몇 백 명의 병역거부자를 관리하기 위해 이만한 조직과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임.

3. 결론

- 국가주권에 바탕을 둔 헌 국제질서 하에서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방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양심의 자유에 바탕을 두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임. 특히 남과 북의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고 아직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주권의 토대가 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할 권리는 인정할 수 없음.
- 소위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특정 종파의 특이한 교리’에 불과하여 “종교적” 신념으로 인정하기 힘들며, 특정 종파에 대해 헌법적 의무 이행을 면제하는 것은 헌법의 특권계층 불인정 정신에 위배됨. 특히 특정 종파의 교리를 헌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 내의 최고법이라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음.
- 소위 ‘양심적 확신’이라는 것도 실상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보편적 가치’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특정 개인에게 헌법적 의무 이행을 면제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됨. 뿐만 아니라 개인적 판단에 의해 헌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음.

- 따라서 소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의 이유로 개인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두 개의 병역법개정법률안은 논의의 가치가 없음.
- 다만 특정 종파의 신도들이 지속적으로 집총을 거부하고 있고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부과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회현상임에 틀림없음으로 이들을 집행유예 상태에서 군의 비집총업무에 종사케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특정 종파의 신도들도 무조건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요구에 응하는 자세변화가 요구됨.
- 나아가 현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병역특례가 병역의무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를 낳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누구나 군에 입대하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증가시키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행 복 오
 - (사) 좋은벗들 -

* 후원회 소회수소부서로부서부서부서 *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서울구치소입니다. 병역법을 위반하여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 글을 씁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꿈 많았던 어린시절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픈 마음에 서울교육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초년부터 학생회활동과 사회활동에 몸담게 되었고, 97년 무렵에는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자'는 취지로 전개된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평화적인 운동 방식의 가능성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불교 수행공동체인 정토회를 통해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토회에서 실무자로서 공동체생활을 하며, 환경·평화·인권·통일·제3세계복지활동 등의 다양한 NGO 활동을 했습니다. 수강되기 직전까지 국제 평화 인권 난민 지원센터인 (사)좋은벗들에서 실무자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군사훈련을 이수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인, 2001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군입대 문제를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불교수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제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기도와 명상을 통해 제 삶이 수많은 생명들과 이웃들의 희생과 고통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들,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며 가졌던 적개심,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부조화, 그리고 눈 먼 전쟁과 분단시대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 갈등과 폭력으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의 아픔이 느껴졌고, 그 원인과 책임이 제게도 있으며, '더이상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는 뼈저린 각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이 끝나면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약속을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노라고 스스로 서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격·총검술·무기조작 등과 같은 일련의 군사훈련은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제게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불자이자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원칙과 현실, 믿음과 의무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제게는 참으로 수없이 많은 번뇌와 갈등이 있었지만, 종교인으로서의 원칙과 믿음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범법자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와 명상을 하며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이겠습니다'라고 생의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은 '불이익을 받더라도 생명을 훼손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와 더불어 '이웃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봉사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20대를 시작하며 30대에 이른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일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의 길이 희생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임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바램은 이 두 가지 믿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우리사회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현재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실로 꿈만 같았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감옥 말고는 어떠한 다른 길도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는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우려와 불안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종다양한 국민들의 견해와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과 제도의 심의가 매우 곤란한 사안일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저는 '대체복무제도'가 또 다른 특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특혜'가 된다면 저는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특혜를 누리하고자 하는 추호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체복무제도가 '또 다른 징벌'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징벌'로서 주어진다면 그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본의를 왜곡하는 것이며, 평화와 봉사의 참 뜻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군복무가 신성하고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지듯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받는 약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또한 충분히 가치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대한민국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발전의 이면에는 무모하리만치 열정적이며 진취적이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도전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소간의 논란과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원천봉쇄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100년 전부터, 때론 전쟁의 시기에, 우리처럼 분단의 불안정한 조건하에서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안보와 부정비리, 사회적 형평의 훼손 등의 큰 혼란과 부작용 없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적 선례를 대한민국도 충분히 받아들일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초기의 시련과 어려움은 있겠으나 과감히 첫 씨앗을 뿌려봄은 어떠실런지요.

한국사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존재했던 지난 반세기 동안, 1만명이 넘는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옥뿐이었습니다.

의원님, 이제는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제가 먼저 앞장서서 멋지게 해 보이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인권지수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의 인프라를

풍요롭게 하며, 국민인권보호의 상징적 제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중한 씨앗을 일구어 보겠습니다. 비록 총을 들 수는 없지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머무르고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만도 많은 젊은이들이 저와 같은 이유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구치소업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들을 매우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복무제도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89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앞으로도 매일 5명꼴로 감옥을 향하고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1000여명의 병역거부 전과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국회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멍에를 벗고, 우리사회 공동체 성원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저는 앞으로 남은 교도소 생활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수들을 돕는 봉사원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무르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생각에서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감옥에서도 피어나고, 삶은 오늘도 새롭기만 합니다. 설령 감옥이라고 피어나지 못할 젊음은 아니지만, 그곳이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길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한 시대를 내다보는 혜안으로써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병역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원님의 심사숙고와 지혜로운 판단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끝까지 읽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2005년 3월 오태양 올림

대체복무 허용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

제 성 호(중앙대 법대 교수)

대한민국 헌법제 21조의 병역거부권/대체복무 인정문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제 성 호

가. 헌법제 21조의 병역거부권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헌법 제23조 1항)

종교적 및 기타 신념에 의한 병역(심판)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의 취지를 침해하고 있는 헌법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국방의 의무는 공중 안전(국가)을 유지·유지하기 위한 의무로서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아니함.

의무이행의 수반자에게 이행 의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이는 '의무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임.

(2) 평등권(헌제)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병역의무를 종교의 신념에 따라 결정한 경우 특정

종교 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게 됨.
- 이는 국가에 의한 종교간 평등대우에 반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른 종교와의 갈등관계를 초래함으로써 국민통합을 해치는 부정적인 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임.

○ 또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집단, 그리고 평화주의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군복무 거부 및 대체복무 선택권이라는 특권을 인정할 경우, 이는 그러한 부류의 자들에 대해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특수계층의 창설'을 초래하게 됨.

(3) '양심의 자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포함 여부

○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양심이 내심의 영역에 존재할 때(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나,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로 실현하려 할 경우(양심실현의 자유) 이는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

○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04.8.26 병역법 제88조(입영기피)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음.

- 즉 현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나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한편 독일과 같이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설령 인정하다고 해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비양심적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판단자의 자의와 주관에 개재될 소지가 많음.

○ 결국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양심에는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 한편 우리 헌법체계 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경우, 양심적 납세거부권도 인정해야 하는 법적 모순과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됨.
- 양심적 납세거부권(양심을 이유로 한 납세 거부 및 대체적 의무/복무 이행 요구)을 인정할 경우 우리 공동체 질서와 국가경영이라는 공동선을 실현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무정부상태를 자초하는 것이 될 것임.

나.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행위의 조장 가능성

○ 병역거부 종교의 교리가 생명 위급시에도 수혈 거부, 국가체제의 불법시/사탄'적 불의세력 간주, 국가의 존재 자체 부인,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봉창 거부, 모든 종류의 투표 참가 불허, 공직 취임 불허 등을 가르치고 있는 바(탁명환, 『기독교 이단연구』, 한국종교문제연구소, 2000, pp. 204-208),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를 파괴 내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

○ 이러한 자들에게 양심적 내지 종교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표 1> 연도별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2,520	1	379	825	561	754

단위: 명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99% 차지

* '00년까지는 입영후 집총거부로 군형법에 의해 처벌(3년형) 받았으나, '01년 이후에는 입영자체를 거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음

다.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 세계인권선언(제18조)과 국제인권 A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8조) 등 국제인권규범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오늘날 국제법상 확립된 개인의 기본적 인권(불가침 및 불가양의 권리)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 단지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수용을 각국에게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 1995년 결의 제38호, 1998년 결의 제77호, 2000년 결의 제34호, 2002년 결의 제45호, 2004년 결의 제54호 등
-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며,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는 최선진 수준의 인권보호 방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혹은 프로그램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적 가치 판단,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환경, 일반 국민정서,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임.
 -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를 무조건 존중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주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할 것임.

2. 대체복무 인정·허용에 따른 문제

가. 징병제(국민개병제) 근간의 동요 우려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기피풍조가 존재하고 있음.
 - 지금 양심적 및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연 600명 정도로서 전체 징병대상 인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음.
- 이처럼 병역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히 이완·약화되어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양심에 입각한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을 가장한 합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
- 앞으로 대체복무 인정시 너도 나도 양심을 빙자해 대체복무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할 것인 바,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전체 병역제도(징병제)의 근간을 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이렇게 볼 때 현단계에서(모병제로의 전환 전까지) 양심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임.
 - 특히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형벌을 통하여 병역기피를 억제하였던 예방효과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

나.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문제

-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대한 강한 요구와 기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가 넓게 허용된다면, 법적·사회적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임.
- 만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선의의 군복무자들로서는 상당한 박탈감 내지 상실감을 갖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전체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음.
- 또한 특정 종교인(여호와의 증인)이 전체 병역거부자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종교간·종파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음.

다. 대체복무의 근본취지에 부적합

- 현재 대체복무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예비군 임무 등 국가가 부여한 군사적 목적과 책임을 다하고 있고, 유사시 군대에 동원되어 전장에 즉각 투입되는 예비병력임.
- 그러나 양심적 및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입영거부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도 국방 임무에 복무하지 않는 완전 '병역면제'(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예비군훈련, 전시동원 등에서 완전 면제)를 요구하고 있음.

- 이는 군대 근처에는 결코 가지 않겠다, 군복을 절대 안 입겠다'는 것으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대체복무 인정시 이러한 '반군대적' 의식 및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동체 질서를 혼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이 같은 요구는 본래 대체복무제도의 근본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고 할 것임.

라. 병역자원 부족 추세

-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1980년대 이전에 징집자원이 연간 40-50만명에 이르러 자원이 남아돌던 시기에 도입한 제도임.
- 그런데 현재 출산율 저하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으로 대체복무제도를 감축·폐지하고 었는 상황임.
- 이 같은 현실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용은 결국 새로운 대체복무의 확대·신설 요구를 확산시켜 징병제도 근간유지가 곤란하게 될 것임.
- 요컨대 최근 병역자원 감소 추세로 현역병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현단계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병력충원 계획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마. 외국과 우리나라제도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특정국가의 병역제도는 안보상황,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역사적 교훈 및 국민정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국가가 자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할 사항임.

○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대만 등 31개국이고, 불인정 국가는 중국, 이스라엘, 터키 등 48개국임.

○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탈냉전 이후 집단안보체제가 확립되어 외부로부터 직접적이고 중대한 안보위협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즉 의무병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하고 있음.

- 특히 독일의 경우,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주변 국가를 침략한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과거역사에 대한 반성 측면에서 일찍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왔음.

○ 대만의 경우 '97년부터 시작한 10년 목표의 감군정책(60만→34만)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징집자원) 초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새로운 환경적 요인 대두) 2000년에 종교사유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게 되었음.

- 우리와는 달리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사회풍조가 거의 없으며, 국민의 신앙분포에 있어서도 불교와 도교의 신자가 대부분이고 기독교 신자는 매우 적은 등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관련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9만여명임에 비해 대만은 4천여명에 불과함(제도시행 이후 연간 병역거부자 발생인원 50명).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을 경험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고, 병역기피 풍조가 엄연히 존재하며, 아직 많은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취약한 실정인 바, 이러한 특수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복무 도입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바. 대체복무제 도입 시기상조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남북한 관계를 포함한 국내외 안보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②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회 풍조가 개선되어야 하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이해와 관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이러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의 제도도입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그 도입을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3. 결어: 현단계 대체복무 도입 반대

○ 병역기피와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600여명의 소수인원이라 하더라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징병제도와 국방의무에 대한 기본질서가 흔들릴 우려가 있음.

○ 특정종교인(여호와증인)이 전체 병역거부자의 99.4%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전도활동에 유리한 여건 조성 등 종교간 및 종파간 갈등 요인이 될 것이 우려됨.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병역거부자 2,103명중 여호와증인신도가 2,090명임

○ 양심 실현의 구실로 또 다른 국가의무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어 사회적·국가적 부담이 우려됨.

○ 또한 현행 대체복무 인원의 축소·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체제도 신설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 이런 점에 비추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부담감이 현저히 감소한 시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론적으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입법안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반대함.

- 다만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 시기에 대비, 연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II. 임종인의원 대표발의안 검토

1.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대체복무자의 인정범위를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 사유의 병역거부자로 함(인정범위).

○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 신청과 함께 판정위원회를 설치함(병무청).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시켜 보호·치료·요양·자활 등 보조 임무를 수행토록 함(임무).

○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한 대체복무자의 경우 육군 현역병의 1.5배 의무복무(36개월)를 해야 함(복무기간).

○ 복무분야는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복무형태는 단체 숙박생활(단체 합숙복무)을 원칙으로 함.

○ 허위 신청자의 경우 대체복무 편입을 취소하며, 처벌 규정 등 관련조항을 신설함.

2. 법률안 자체의 내재적 문제점

가. 법(안)적용 대상자의 정의

○ 대체복무자를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 '양심적병역거부자' 및 '사회복지요원'으로 지칭하고 있음(안 제2조 및 안 제4절 제명).

○ 그러나 동 법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법률용어로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논란이 존재할 수 있음.

-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자의 양심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임.

나. 대체복무자의 복무분야

○ 대체복무자의 복무분야로서 사회복지분야에서 복무토록 하고 있음(안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지원

다. 대체복무자 배치

○ 대체복무자 배치에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다음해의 사회복지요원의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복무시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복무분야와 복무시설을 지정하여 배치토록 하고 있음(안 제43조의8 제1항 및 제2항).

라. 대체복무기간

○ 대체복무기간으로 육군 현역병의 1.5배를 복무하게 규정하고 있음(안 제43조의10 제1항)

○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시행이 징벌적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고, 동시에 그 복무기간 또한 과도하게 길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됨.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 정서상 과연 1.5배의 대체복무기간을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마. 지휘감독 및 합숙

○ 지휘감독 및 합숙과 관련해서, 법안은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 복무시간 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군부대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3조의11 제1항 및 제3항).

○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공익근무요원의 예에 따라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이 갖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또한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복무시간 외에는 합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감정을 배려한 규정으로 보임.

○ 그러나 이들의 합숙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적지 않은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현행 대체복무자들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대체복무자들에게도 합숙을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대상

○ 기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그러나 복무를 마친 후 그 소집을 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면

서(안 제43조의10 제1항),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대상 규정인 현행법 제44조는 개정하지 않고 있음.

○ 현행법 제44조는 제2국민역은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복무만료 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이상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함.

○ 다만 형평성문제와 관련하여, 병력동원훈련 소집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봉사업무에 복무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그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소집기간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길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좀더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임.

사. 현역병에 대한 양심적병역거부 인정 문제

○ 법 시행 전 입영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신청을 하지 못한 현역병에 대하여 60일 이내의 신청권을 인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2항 제4호).

○ 법 시행 전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 인정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재고할 필요가 있음.

Ⅲ.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 검토

1.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공익시설에서 보호·자활 또는 소방·의료·구호 등 지원 업무종사자를 대체복무요원으로 정의함.

○ 육군병의 1.5배 기간(36월)을 복무토록 한 후, 제2국민역에 편입시킴(예비군제외).

○ 중앙위원회(국방부)와 지방위원회(지방병무청)를 설치하여, 대체복무자를 판정함.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대상에서 제외함.

2. 법률안 자체의 내재적 문제점

가. 법(안)적용 대상자의 정의

○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으로 지칭하고 있음(안 제2조 및 안 제1절의2 제명).

○ 병역법 체계상으로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의 '대체복무요원'이란 용어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기존의 대체복무자와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대체복무자 지칭 용어를 '양심에 근거한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대체복무자의 복무분야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에 복무하게 하되, 본인이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조 및 안 제33조의16 제1항).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단체 또는 시설(이하 “대체복무시설등”이라 한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또는 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이하 “사회복지관련업무”라 한다) 또는 소방·의료·재난 또는 구호 등의 업무(이하 “공익관련업무”라 한다)에 종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복무분야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복무자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현역에 복무하게 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그 복무분야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국민감정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임.

다. 대체복무자의 배치

○중앙위원회가 매년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대체복무시설 등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지방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고, 지방위원회가 대체복무시설 등을 지정하여 배치토록 하고 있음(안 제33조의19 제1항 및 제2항).

○그런데 현행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지정업체의 선정권을 병무청장에게 주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기관의 배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주고 있음.

○법안은 국방부에 두는 중앙위원회 및 지방병무청에 두는 지방위원회에 복무시설 종류 결정 및 배치권을 주고 있으나, 이는 현행 병역법 체계와는 맞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을 판정하는 위원회에 정책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한편 법안 제33조의13 및 제33조의15제4항에 의하면, 지방대체복무위원회 및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체복무 허용은 일반인이나 선량한 군복무 이행자들에게는 일종의 특권적 수혜라고 생각될 여지가 많은 것인 바, 이 같은 대체복무 판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선행시켜야 할 것임.

-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복무 인정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부정, 제3자의 이익제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라. 대체복무기간

○대체복무기간으로 육군 현역병의 1.5배를 복무하게 규정하고 있음(안 제33조의22 제1항).

○현역복무기간과 대체복무기간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 가능여부를 둘러싼 문제는 상존함.

○자구상으로는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의 규정 형식(현행법률 인용)이 임종인 의원안보다 더욱 타당함.

마. 지휘감독 및 합숙

○ 법안은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장, 복무시간 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군부대외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3조의23 제1항 및 제3항).

○ 지휘감독 및 합숙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의 검토내용과 같음.

바.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대상

○ 법안은 명시적으로 대체복무요원을 소집 및 훈련대상에서 제외하면서(안 제44조 단서), 이들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 소집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에 복무토록 하고 있음(안 제49조 제2항 및 제3항).

○ 명시적으로 대체복무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 후 예비군의 소집 및 훈련 기간 중 대체복무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에 복무토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제도 도입 취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평성문제와 관련하여, 병력동원훈련 소집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봉사업무에 복무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복무기간을 병력동원훈련소집기간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길게 할 것인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사. 현역병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문제

○ 법안의 입법취지는 명백하지 않으나 법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법 시행 전 입영하여 대체복무신청을 하지 못한 현역병은 물론이고, 법 시행 이후에 역종판정을 받은 후 대체복무신청을 하지 않고 입영한 현역병 또한 신청기간의 제한 없이 대체복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3조의12 제2항).

○ 대체복무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게 무기한 대체복무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① 군 병력 운용에 있어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고, ② 이미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특히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역병과 보충역에 대해서는 징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안 제33조의14제4항 단서, 동조 제5항), 이러한 규정이 시행될 경우 어느 누구도 징총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임.

- 이 규정은 결국 군대조직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며, 적어도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IV. 결어

○ 소위 양심적 징총거부나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보상황의 근본적 개선, 국민적·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특히 남북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현실에서 긴장이 해소되고 안보에 대한 부담감이 현저하게 감소한 시점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현단계에서 대체복무제 입법에 반대하지만, 다만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정착 시기를 대비하여, 충분한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이들의 납세안과 형사판 단계적 대체복무제서 간성이 축소됨은 인민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게 감소할 시점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현단계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지만, 다만 현행법에 공정한 평가와 시기를 대비하여 충분한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음

입출법총칙 중법령

兵役法中改正法律案
(임종인의원 대의안)

의안
번호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

발의연월일 : 2004. 9. 22
 발의의원 : 임종인 · 김덕규 · 김성근 · 김성환 · 김재홍 · 김현미 · 김재덕 · 이광철 · 이광호 · 유기민 · 장경수 · 이철우 · 이인영 · 장광수 · 장광숙 · 정광주 · 배일도 · 김홍일 · 손봉숙 · 이정일
 신국환 의원(22인)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 이유로 징역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병역거부 등의 죄로 처벌받고 있어 이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극히 이득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지는 그들의 사상 또는 신념을 고려한다면 전무상황에서 실제 임무수행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이들에

임종인의원 대표발의

兵役法中改正法律案
(임종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2
----------	-----

발의연월일 : 2004. 9. 22.

발 의 자 : 임종인 · 김덕규 · 김성곤
 김영춘 · 김재홍 · 김현미
 김형주 · 문병호 · 심재덕
 유선호 · 유시민 · 이광철
 이상락 · 이원영 · 장경수
 장향숙 · 정봉주 · 배일도
 김홍일 · 손봉숙 · 이정일
 신국환 의원(22인)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징총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병역기피 등의 죄로 처벌받고 있어 이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더라도 이들의 사상 또는 신념을 고려한다면 전투상황에서 실제 임무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이들에

게 고통을 주는 것 보다는 양심적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여 이들에게 징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병역대체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빙자하거나 허위로 가장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신청을 하거나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형벌을 과함과 동시에 징병검사 때 처분 받은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양심적병역거부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징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나.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둠(안 제43조의3 신설).

다.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라.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지원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마.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징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시근로소집의 의무만을 지도록 함(안 제43조의10 신설).

바. 사회복지요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아래 단체 숙박생활을 하도록 함(안 제43조의11 신설).

사.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를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13 신설).

아.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된 때 또는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한 때 등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도록 함(안 제43조의14 신설).

자.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빙자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된 때 등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공익분야”를 “공익·사회복지분야”로 하고, 동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사회복지요원”이라 함은 제43조의9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사회복지요원”으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사회복지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하며, 동조제2

항중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43조중 “및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및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5장에 제4절(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및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제43조의2(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현역 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양심적병역거부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여부를 판청받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 ①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지방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 또

는 임명한다.

1. 철학·종교학·심리학·사회학 또는 정치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종교계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계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위원회의 심사) ①지방위원회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인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지방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120일”은 “90일”로 본다.

제43조의5(사실조사 등) ①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할 수 있다.

제43조의6(사회복지요원의 편입)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한다. 이 경우 현역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43조의7(사회복지요원의 업무)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지원한다.

제43조의8(사회복지요원의 배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해의 사회복지요원의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복무시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요원의 적성·전공·자격 및 소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복무분야와 복무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의9(사회복지요원의 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복무분야를 정하여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0(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사회복지요원은 육군 현역병의 1.5배를 복무하여야 하며, 복무를 마친 때에는 그 소집을 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②사회복지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43조의11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사회복지요원이 제43조의14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때에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복무기간 3월 마다 1월을 감축한다.

⑤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경고처분하고,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 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⑥사회복지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때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1(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등) ①사회복지요원은 그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사회복지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요원은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군부대외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택 또는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별 또는 소규모의 숙박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거리·교통상의 이유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2. 특정근무지역에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수가 과소한 경우
3.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동료와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직무수행 및 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및 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2(사회복지요원의 신상이동통보) ①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자택에서 숙박생활을 하는 사회복지요원으로서 그 가족 전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4.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폐쇄·운영중단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사회복지요원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 복무시설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의13(복무중 양심적병역거부자의 판정) ①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위원회는 그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14(사회복지요원의 소집취소)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한 때
2. 제43조의13의 규정에 따라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 또는 제43조의11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숙박생활을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43조의10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처분을 4회 이상 받은 때
5. 단체숙박생활시 감독관 등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제55조제1항 본문중 “보충역”을 “보충역(사회복지요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2국민역”을 “제2국민역(제4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종장교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사교육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심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여야 한다.

4.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신청한 자로서 그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63조제2항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사회복지요원소집”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소집대상보충역중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선원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사유로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 종료 전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1.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제36조, 제43조의6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편입 제7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사회복지요원의 소집”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사회복지요원의 소집”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3조의14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제73조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4항 및 제75조의2제1항중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3호중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군복무 또는 공

익근무요원·사회복지요원의 복무”로 한다.

제8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43조의6 또는 제43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되거나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신청한 자로서 그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제2항중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주 또는 제43조의12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장이 제40조·제43조의12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의 허위 신청 등) ①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빙자하여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된 사람

2. 신청인을 대리하여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은 사람

③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8조제1항2호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89조의2제1호중 “공익근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91조 전단중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를 “공무원·의사·치과의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로, “연기 또는 면제”를 “면제·변경 또는 연기”로 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장(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사회복지요원을 제43조의8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복무분야와 복무시설외의 분야와 시설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공포 후 징집 또는 소집 전에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집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이 법 시행 일 이전에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3.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종전의 병역법 제88조 또는 균형법 제44조를 위반한 사람
4. 현역병(제21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무중인 사람

③(복무기간에 대한 특례) 현역병으로서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징집 등의 연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심사가 종료되는 날

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한다.

⑤(형의 집행에 관한 특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종전의 병역법 제88조 또는 균형법 제44조를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양심적병역거부자로서 인정받은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이미 집행된 형기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또한 종전의 병역법 제88조 또는 균형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양심적병역거부자도 이 부칙에 따라 면소판결하고 구속기간등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회) ①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지방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철학·종교학·심리학·사회학 또는 정치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종교계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계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4(위원회의 심사) ①지방위원회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인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지방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의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사람에게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0(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사회복지요원은 육군 현역병의 1.5배를 복무하여야 하며, 복무를 마친 때에는 그 소집을 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②사회복지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43조의11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사회복지요원이 제43조의14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때에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복무기간 3월 마다 1월을 감축한다.

⑤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복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경고처분하고,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 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⑥사회복지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때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11(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사회복지요원은 그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사

회복지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요원은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하에 군부대외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택 또는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별 또는 소규모의 숙박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거리·교통상의 이유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2. 특정근무지역에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수가 과소한 경우
3.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동료와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 설>

경우

④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직무수행 및 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및 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2(사회복지요원의 신상이

동통보) ①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자택에서 숙박생활을 하는 사회복지요원으로서 그 가족 전

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4.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폐쇄·운영중단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사회복지요원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 복무시설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의13(복무중 양심적병역거부자의 판정) ①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위원회는 그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14(사회복지요원의 소집취소)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한 때

2. 제43조의13의 규정에 따라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 또는 제43조의11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숙박생활을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43조의10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처분을 4회 이상 받은 때

5. 단체숙박생활시 감독관 등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第55條(教育召集對象等) ①교육소

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60일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第57條(學生軍事教育等) ①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第55條(教育召集對象等) ①-----

-----보충역(사회복지요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국민역(제4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第57條(學生軍事教育等) ①-----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第58條(醫務·法務·軍宗將校등의 兵籍編入) ① ~ ③ (생략)

④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⑦ (생략)

第60條(徵兵檢査 및 入營등의 延期) ① (생략)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58條(醫務·法務·軍宗將校등의 兵籍編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군종장교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사교육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第60條(徵兵檢査 및 入營등의 延期)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3조의

1. ~ 3.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第63條(家事情으로 인한 轉役등) 第63條(家事情으로 인한 轉役등)

① (생략)

②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한다.

③ (생략)

第65條(兵役處分變更등) ① 현역병 第65條(兵役處分變更등) ①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

4의 규정에 따른 심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신청한 자로서 그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③ (현행과 같음)

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 후단과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 ·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사회복지요원소집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

⑤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⑥ ~ ⑦ (생략)

第68條(兵役義務의 延期 및 減免의 制限) 제86조 내지 제88조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罪)를 범한 사람, 징집 또는 소집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

또는 사회복지요원 소집대상보충역중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선원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사유로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 종료 전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第68條(兵役義務의 延期 및 減免의 制限) -----

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편입

2. 3. (생략)

4.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第71條(入營義務등의 減免) ①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생략)

1.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제36조, 제43조의6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편입

2. 3. (현행과 같음)

4.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第71條(入營義務등의 減免) ①-----
-----공익근무요원·사회복지요원의 소집-----

1. -----
-----공익근무요원·사회복지요원의 소집-----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 7. (생 략)

8. 제6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 또는 해제된 사람

9. 10. (생 략)

② (생 략)

第73條(復學保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學士日程)

2의2. 제43조의14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3. ~ 7. (현행과 같음)

8.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

9.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73條(復學保障)

-----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第75條(報償 및 加療) ① (생 략)

②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해당요건과 그 확인·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등의 부담으로

第75條(報償 및 加療)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